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분할출원, 분리출원”을 “분리출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3제3항제1호 중 “분할출원, 분리출원”을 “분리출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실용신안등록출원이 <u>분할출원</u>, <u>분리출원</u>,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. 3. (생략) ④ (생략)	----- -----. 1. ----- <u>분리출원</u>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